

북한법(학)과 현실과의 관계*

朴 秀 赫

- I. 서론
- II. 북한의 현행법(학) 이론과 내용
- III. 북한법(학)의 내용과 실제
- IV. 결론

I. 서 론

제 1차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법(학)의 체계와 이론은 원래 Marx-Lenin 주의 법체계와 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북한법(학)은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주체사상과 최근에는 김정일의 붉은 깃발사상이 북한법(학)체계와 법이론 및 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오늘날의 실제 법(학)체계도 법(학)이론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오늘의 북한의 법(학)체계와 법(학)이론 및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필수적

* 이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 완성되었음.

으로 거쳐야 할 과정중의 하나인 우리 남한의 법(학)과 북한의 법(학)과의 동화·통합을 위하여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전단계의 내용이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제를 3년동안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2차년도에 최종 보고서에 해당한다.

II. 북한의 현행법(학) 이론과 내용

1. 법일반

세계의 법을 크게 大陸法系와 英美法系 그리고 사회주의법계와 그밖에 회교법계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한 공산주의 체제하의 법체계는 막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하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사회주의 법의 모체인, 막스-레닌주의가 뿌리를 박고 성장한 구 소련의 법체계는 북한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회주의 법체계에 전수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각 공산국가들은 그들 국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당과 지도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많은 변화와 수정을 가하였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사회의 전분야에서 법이 우선함을 요구하고, 정치활동 역시 법에 의해 규율되며, 모든 정치 권력자들은 법의 기속하에 국가정치활동을 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공산주의에 근간을 둔 전체주의 독재하에서의 법은 정치활동과 정치권력자의 행위를 규율하고 제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가 법 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구 동독의 법학자 Gramann은 “사회주의 법은 막스-레닌주의 당의 정치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이러한 법은 정치와 동일한 지위나 위에 존재할 수가 없다”¹⁾ 라고 하였고, 또 구 동독의 법학자 Klenner는 “법은 정치의 하위 범주에 있다”²⁾라고 한 바 있다. 이 두 표

1) W.Gramann - R. Zehäus, Staat und Recht(DDR) 1973, p886.

현에서 마스-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기본적인 명제가 간단하고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은 법이념에 대한 정치우위를 정당화시키고, 또한 법의 도구성을 표현하며 당의 지도적 역할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연수도 또한 “우리의 법은 당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왜냐하면 우리 당정책은 혁명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 실정, 근로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³⁾라고 하여 ‘법은 당정책 실현의 무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법에 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리론’이란 김일성 60세 회갑 기념논문집의 머리말에서 “사회주의 법에 관한 혁명의 천재적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법건설 문제를 옮겨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준 가장 현명한 리론이다, 그것은 또한 마스-레닌주의 법리론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온갖 외곡을 물리치고 이 리론의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 리론이며, 마스-레닌주의 법이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마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창조적 리론이다”⁴⁾라고 하여 북한법은 마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법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법학을 법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는 북한의 법학은 일률적으로 부루조아지법학과 법이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북한법학의 서구민주주의법학에 대한 비판법학의 근원은 다

-
- 2) H. Klenner, Der Maxismus- Leninismus über das Wesen des Rechts, Ost Berlin, 1954, p.66
 - 3) 정 연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 재산보호관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 사회과학, 1983년 제1호, p. 60.
 - 4)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주의 법에 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리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1, p.4.

음과 같은 김일성교시에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⁵⁾

북한의 법학자 심형일은 그의 논문에서 “사회주의 하에서 법에 대하여 가지는 근로인민대중의 주인의 지위는 부르조아사회에서 표방되는 ‘만인의 법’과 같은 초계급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착취계급, 반동세력과 대치되는 관계에서 그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급적 관계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법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⁶⁾

라고하여 서구민주주의법학의 기본원칙인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법을 차별화함으로써, 법은 단지 근로인민대중만이 법의 주체이며 객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법학자 김봉철은 “부르조아법사회학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주체의 사회력사관과 법이론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그 이유는 “부르조아 법사회학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제국주의가 발생발전하면서 그 려명기에 부르조아 ‘자연법’이론과 ‘력사법학과’리론을 반대하고 독점부르조아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의 하나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높은 단계에 이르러 독점이 형성되고 따라서 독점자본이 사회경제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결과 로동계급의 빈궁화는 더욱 촉진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게

5) 김일성 저작집, 27권, p.597.

6) 심형일, “사회주의 법과 법전설의 기초원리,” 사회과학, 1985년 제 2호, p.37.

되었다. 자유경쟁시기의 '천부민법'을 제창하는 '자연법학과'리론과 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만을 고집하는 '역사법학과'리론을 가지고서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더는 속일 수 없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 리익을 대변할 수 없게 되었다. 독점 부르조아지에게는 저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법리론이 요구되었다. 독점부르조아지의 사환군들은 법이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 단계에서 자본과 생산이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종래 자유경쟁시기의 법률리론의 재편성을 요구하여 나섰다. 이러한 제국주의 독점 부르조아지의 요구를 대변하여 제국주의 국가 통치현실을 법리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바로 '법사회학'이었다"7)라고 하면서 법사회학과 법사회학의 성립역사가 부르조아지와 제국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피지배계급을 통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는 서구민주주의 법사회학에까지도 비판법학론이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법의 모든 법이론은 서구민주주의의 법을 비판하고 반동적인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법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데 치중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막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한 사회주의법의 실현이 그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김일성 이론 즉 김일성주의로 수정 발전시켜서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일당 독재체제의 유지 수단으로서의 법을 발전시켰다.

2. 분야별 법(학)이론

1) 헌법(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법은 당정책, 즉 정치 실현의 수단

7) 김봉철, "현대부르조아 법사회학의 반동적 본질," 사회과학, 1986년 3호 p.59.

으로서 정치의 하부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헌법 역시 당정책 실현의 한 도구로서 정치의 하부 제도이다.

북한의 정치사전에서는 이러한 북한 헌법을 “ 국가 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 원칙을 규제하는 국가의 기본법·헌법의 기본적 본질과 사명은 그가 토대하고 있는 사회경제제도와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주도적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공화국의 기본법으로 되어 있다.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국가 사회제도의 기본 문제들을 확고화 하며,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 주권기관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 보충된다는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제국가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관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법을 기초로하여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헌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1948년 최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후 1972년 12월 27일 개정 헌법인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때 공산권헌법의 유형 중 사회주의헌법의 전형으로서 구소련의 스탈린헌법상의 사회주의 제 원리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강화 수단으로서 개정헌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채택 전 1972. 10. 23. 부터 11. 26.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기사에서 언급된 사회주의헌법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이 헌법초안이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득한 위대한 성과를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작성되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우리당의 이론과 방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제원칙을 무엇보다도 혁명적으로 옳게 규제함으로써 이미 획득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힘있게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법적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하고, 또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헌법초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심오한 이론에 빛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문헌”이라고 했다.

이와같이 북한법이 사회주의 법을 그 근간으로 하고 명칭 자체도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⁸⁾ 그 위에 주체사상이라는 허울을 씌워놓았다. 북한 헌법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제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 계급로선, 군중로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그리고 주체사상이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지 20년 후인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3차회의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의 법학자 심형일은 그의 저서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론’⁹⁾을 통하여 개정 사회주의헌법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한 지금까지의 헌법구성체제는 사회주의국가 생활 및 사회의 현실을 법제화하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주의 헌법의 헌법구성체제는 정치·경제·문화분야의 제원칙을 위주로 규제하는 독창적이고 우월한 새 형태의 주체적인 헌법구성체제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제반 헌법적 규제를 완비해 준다고 역설하였다. 심형일이 그의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에서 주장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는

8) V. Chirkin, Yu, Yudin, O.Zhidkov,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 Progress Publishers, 1979, p.309; 송 주명역, 막스주의 국가와 법이론, 새날, 1990, pp. 289-290.

9)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1) p. 63.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중심의 정치생활론

그는 사람의 정치적 자주성은 정치생활에 의하여 담보되며 정치생활을 통하여서 만이 사람은 정치적 존재로서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역설하여서 1992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 3조의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입헌화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둘째,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자립

심형일이 주장한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자립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를 자체의 경제적 기초로 삼음으로써 경제생활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쌓을 수 있다고 하여, 공산주의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달성되면 국가는 노동자·농민의 천국이 되어 인민대중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그러나 자칭 사회주의국가로 달성되었다고 하는 북한은 동서대립,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무력적 대치상태가 무너지고 과거의 공산국가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산상태의 극복을 위한 민주화 물결 속에서 공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몇몇 안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교역 대상국이던 동맹국들의 민주화로 인한 세계적 경제교류에서의 고립은 국가경제를 점점더 빈곤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논리가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난극복의 자구책으로서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자립"논리가 전개되었다.

심형일의 이러한 논리의 결과로서 1992년 개정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자립경제의 강조는 물론이고 대외경제부문의 개방과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약간의 조치를 허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에 의하면 문화분야의 입헌목적은 문화혁명에 대한 목표인, 모든 근로자들의 공산 사회주의자로의 육성,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화건설과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기본방향을 명확히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론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서구민주주의 문화의 유입이 세계경제와 문화교류가 일일생활권 속에 있는 현대사회의 조류에 휩쓸려 급속히 진행됨으로서 김일성과 김정일 일당독제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고도의 섹국정책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위국방의 원칙

심형일은 계속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국방의 자위를 달성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적 주권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자주적인 생활을 지키면 대외활동에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을 관철한다고 자위국방의 헌법원칙화를 강조하였다.

그의 논리에 따라 1992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방에 관한 조항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자위국방의 원칙 역시 소련을 위시한 동 유럽의 민주화 물결로 인한 공산당의 권력상실과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소멸로 인한 북한공산당의 권력상실과 북한의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로서의 방어태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헌법이론은 사회주의국가건설이론을 거쳐서 사회주의국가와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한 이론으로서,

그 이면에는 공산당의 실권과 김일성체제유지 그리고 김일성의 세습 집권자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새밀하고 치밀한 헌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또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면서 “개정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채택이후 20년간 김일성주석과 로동당이 새롭게 제시한 사상과 이론 및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¹⁰⁾.

이와같이 이번 개정 사회주의헌법의 상징적·형식적 특징은 ‘김일성과 북한로동당이 새롭게 제시한 사상과 이론’으로서 강화된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극복적·권력승계적 헌법이론들을 기초로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표면적으로는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면에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집회·결사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학문적인 가치가 전혀없는 정치적 목적의 권력지지논리에 근거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사법분야

민사법의 규율대상은 크게 나누어서 민사에 관한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 경제법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인 재산공유제의 원칙으로 인하여 상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북한 민법의 특성과 법원리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민법학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0) 1992. 4. 9. 북한중앙방송 보도: 주간북한동향, 제67호, 통일우선 정보분석실, 1992. 4. 5-11, p.9.

(가) 민법(학)

서구민주주의하의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私的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사유재산의 존재를 바탕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가장 중요한 민사법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과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민법도 다른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와 같이 재산의 공유와 공동생산에 의한 재산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일종의 공법적인 규율형태¹¹⁾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하의 민법이 주장하는 민법의 기본원칙들은

- (1)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 소유의 원칙
- (2) 사회주의 공유재산 보호의 원칙
- (3) 사회주의 공유재산 우선의 원칙
- (4) 민법상 권리평등의 원칙
- (5) 중앙집권제 원칙
- (6) 계획성과 경제체산제의 실현보장의 원칙
- (7)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합치시키는 원칙
- (8) 노동자의 단결 및 협조를 보상하는 원칙
- (9) 민법적 법률보장의 원칙 등을 열거할 수 있다.¹²⁾

이와같이 사회주의민법은 사회주의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된, 1991년 4월 12일자로 제정된 북

11) Rorbert Reich, Sozialismus und Zivilrecht, Athenaum Verlag, 1972, 134f.; G. Brunner, JuS 1975, 744ff.; H.D. Kittke, JZ 1976, 268ff.; O. Kringe, MDR 1976, 189ff.

12) 최달근, 북한민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편, 1994, P. 269.

한 최초의 민법전 교과서 격인 '민법 I'의 머리글은 “공화국 민법학은 우리나라 법률과학의 한 부문으로서 사회경제관계의 일정한 분야, 특히는 소유관계, 거래관계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광범한 경제관계의 분야를 규제하는 공화국 민법의 혁명적 본질과 역할, 그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북한의 민법의 규율 대상이 소유관계, 거래관계와 같은 경제관계임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는 북한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과 경제거래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민법이 소유관계나 거래관계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관계의 분야를 규율하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북한주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북한주민들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한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북한에서의 소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급받는 배급분과 채전, 소규모 자급자족을 위한 가축의 사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민법의 성문화된 형식적 규율내용과 실체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북한민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 민법의 기본원칙은 '민법전' 제1편 제1장에 규정되어 있다.¹³⁾ 여기에서 북한 민법은 다음의 7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a.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 b. 재산거래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한다.
- c. 재산거래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도록 한다.
- d. 재산거래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한다.

13) 민주조선 법규해설, 민법(1) (91.4.23)

- e. 근로자들에게 재산관계에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리와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 f.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g. 재산거래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 기관·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이익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재산의 공유와 공동생산에 의한 재산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계획경제가 북한민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상과 같은 민법의 일반원칙들은 헌법에서 표방한 원칙을 그대로 민법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민법 I’ 교과서에서는 “공화국 민법학 연구에서 유일한 지도적 지침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재적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서 민법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법학연구의 지도적 지침으로써 정치실현의 도구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민법을 학문적으로 분류하자면, 민법이 공법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공유와 사회주의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하나의 학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가족법(학)

북한은 민법을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등가보상적 재산관계와 그와 밀접히 결부된 인격적 관계를 규제하는 부문법’¹⁴⁾이라고 정의한다. 그들이 말하는 ‘인격적 관계를 규제하는 부문법’은 발명, 창작, 저작 등에 관련된 법으로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민법은 私人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일반법으

14) 법학사전, 사회과학연구소, 1971, p.246.

로 정의되고 있어서 가족법이 민법의 일부로 규율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민법은 등가보상적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데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민법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와같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도 대부분 그러하듯이, 북한은 가족법을 민법의 체계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가족법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등 일부 서구민주주의국가에서도 가족법이 민법에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가족법의 민법과의 귀속여부는 북한가족법의 특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민법이 일종의 공법에 속하고 가족법은 민사법에 속한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재산의 공동소유로 인하여 민법이 공개념인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반면에, 가족법은 공개념에서 벗어난 순수한 인격적 관계를 규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가족법을 '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범부분'이라고 법학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며¹⁵⁾, 이 때는 상속관계가 재산과 관련됨으로써 가족법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상속관계가 재산관계로 취급되어 민법의 범주에서 규제되어 오던 것이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하여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북한가족법 제 1장 '가족법의 기본'편에 속하는 제 7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족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고 하여 재산적 관계를 그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때 제정한 가족법에서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하여 상속관계를 가족법에서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5장 '상속'편(제 46조-제 53조)을 따로 두어 상속관계가 정식으로 가족법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15) 법학사전, 사회과학연구소, 평양, 1971, p.3.

북한의 법체계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법의 영향을 받아서 민법과 가족법이 독립된 법전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구 소련법체제는 '상속'을 민법에서 취급하지만 북한은 상속을 가족법에서 취급함으로써, 구 소련법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상속법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체계가 구 소련법과 동일하였으나, 이번 가족법전에서는 사회주의법체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계 요소를 삽입하였다.

그밖에 공산사회주의적 요소를 제외하면, 가족법에서 규율하는 가족관계의 범위나 가족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보는 점 등에서는 대체로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편에서 규율하는 가족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법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

(다) 민사소송법(학)

서구 민주주의국가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은 사유재산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생산·유통·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을 적정·공평·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¹⁶⁾.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사적 소유권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상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그들의 자치적 분쟁해결기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처분권주의) 그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및 증거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¹⁷⁾.

그러나 북한이 1976년 1월 10일에 제정한 민사소송법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며 창조적인 생활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법현상들과 불건전한 요소들을 중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위대한 계급투쟁

16)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2, p.46.

17) 김홍규, 위의책, 41면 참조.

의 무기를 마련하는 데에 그 제정 의의가 있다”¹⁸⁾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토지·건물 기타 중요생산재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에 귀속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토대로 하고, 이들 공적 법인간의 재산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중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¹⁹⁾.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이들 중요생산재를 제외한 극히 제한된 나머지 개인 소유의 재산권 및 기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북한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한 증거재판의 원칙²⁰⁾과 소송당사자의 소송상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²¹⁾.

북한 민사소송법 제 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 1조-제 7조)에서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의 정책에 의한 프로레타리아독재 실현의 원칙

북한 민사소송법 제 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에 따라 재판소들이 민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활동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절차는 당의 정책에 따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하위에서 당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임을 선언하고 있다.

(2) 주체사상화의 원칙

18) 김정금, 이황, 민사소송법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3.23. p.31.

19) 김정금, 이황, 중재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11. 19. pp.5.

20) 김정금, 이황, 민사소송법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29.

21) 위의 책, p.62.

동법 제 2조, 제 3조, 제 4조에서는 민사소송법이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창조적인 노동당의 사상적 지주인 주체사상을 북한주민에게 심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주민의 주체사상화가 또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것을 알 수 있다.

(3) 인민재판의 원칙

동법 제 5조는 “재판소는 민사소송활동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방직후 일제의 법률과 재판기관은 조선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라 하여 폐지되었다. 그후 북한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가 창설되어 그의 지도하에 재판이 자연발생적으로 각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실행되었고, 이때 실행된 재판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은 군중이 참가한 공개재판이었는데, 참가한 군중이 증거를 제출하고 발언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인민 대중에 의한 재판형태를 인민재판 내지는 민중재판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던 재판 방식의 형태를 변경 입법화하여 소송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4) 증거재판주의의 원칙

동법 제 6조는 “재판은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민주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를 막론하고 증거재판주의는 현대 재판의 기본원칙이다.

(5) 소송당사자의 권리평등의 원칙

동법 제 7조는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은 재판소 앞에서 소송상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법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북한 민사소송법도 당사자쌍방은 평등하게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소송당사자의 소송상 권리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국가의 당사자의 절차권보장의 원칙과 같다.

그외에 북한민사소송법의 두드러진 특색으로는 철저한 직권주의와 처분권주의의 제한 및 검사의 광범위한 준법성 감시이다. 또한 민법이 공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도 공법의 한 형태인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형식적으로는 김일성이 주장하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실현으로 인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주민을 동원하여 군중심리를 이용한 김일성 일인독재를 피하려는 의도를 민사소송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민주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 모두에 통용되는 몇몇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사회주의국가 실현과 일인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동에 일관되어 있어서 학문으로서 평가할 수가 없다.

3) 형사법분야

형사법이라고 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하에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모든 실체법과 절차법을 말한다. 이러한 형사법은 크게 나누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도 역시 1950년 3월 3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학문적 성격을 살펴본다.

(가) 형법(학)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형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범죄없이 형벌없다’는 원칙하에 한 행위가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죄와 벌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대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법이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같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국가의 법원칙을 사회적 위험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북한 형법제 7조는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의하여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 8조는 “본법 각칙에 규정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한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형법도 역시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적 위험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학자 심현상은 사회적 위험성에 대하여 “범죄는 공화국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또는 그 법률적 질서를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다. 수행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은 범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징표이다”²²⁾라고 하고 있다. 또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은 공화국 인민민주주의의 제도의 기본 또는 우리의 법질서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바 그것은 온갖 범죄의 사회적 속성의 본질적인 것이다”²³⁾라고 하면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범죄가 사회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 형법 제 9

22)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평야국립출판사, 1957, pp.101.

23) 심현상, 앞의 책, pp.111.

조도 이와같은 의미로 “범죄는 국가주권에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사회적 위험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의 개념이 불확정적이어서 법적용의 자의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형법규정 또한 불확정적으로 되어서 형법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북한의 형법은 “조선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²⁴⁾라고 정의한다.

이와같이 형법이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형법의 제재대상이 ‘반혁명자’와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자’로서, 형법의 보호법익이 혁명과 사회주의제도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북한의 형법규범은 형법의 기본이념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법의 계급적 본질은 그 법이 어떤 계급의 의사, 정치를 표현하며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데, 북한형법은 그들의 수령과 지도자가 영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노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회주의형법이라 한다²⁵⁾. 심현상은 그의 논문에서 “정치관계의 한 표현형태로서의 형법”²⁶⁾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형법도 정치적 도구임을 시사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의 형법은 법의 원래의 목적인 질서유지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채, 법을 자의로 적용 함으로써 사회주의

24) 김규성,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형사법제, 일본 사회평론사, 1988, p.181.

25) 김근식, 형법학 I, 2판, 1986, p.70

26) 심현상, 공화국 형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법학논문집 제2집, p.45.

건설과 일당독제 및 김일성 일인독제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형법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一考의 여지도 없다해도 좋을 것이다.

4) 국제법(학) 분야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공산제국 및 비동맹권 제국과는 물론, 몇몇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쿠바·북한·중공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소련과 동유럽등 거의 모든 공산주의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 전향함으로써 인하여 북한은 공산주의 동맹국가들 상실했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오늘날의 현실은 북한을 서방 제국들과 교류하도록 더욱더 강요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지금 UN에 가입되어있고, 많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였으며, 각종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금 북한은 국제간의 교류와 국제법과의 많은 접촉뿐만이 아니라 국제법도 인정하고 있다.

김일성 교시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은 북한이 국제법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범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란폭한 위반입니다. 유엔은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지, 미제국주의자들이 타국영토를 침범하여 타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유린하며 약소민족들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침략적 목적에 이용하라고 창설된 것이 아닙니다.”²⁷⁾

또 북한의 김영철은 ‘자주시대의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리해’ 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국제법과 관련한 모든 리론

27) 김일성저작집, 6권, p.64.

실천적 문제들을 옮겨 풀어나가기 위한 출발적 전제로 된다”²⁸⁾고, 전제하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는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주체의 국제법리론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법의 근본사명이라는 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국제법의 본질을 규제대상과 내용, 그의 목적과 준수의 담보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설명하였다.²⁹⁾

김영철은 이와같이 국제법이론에까지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결합시켜 소위 말하는 ‘주체의 국제법이론’을 역설하였다³⁰⁾.

그는 또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의 본질적 요소는 강제이다. 법은 그 위반에 대하여 강제를 가하는 기능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강제없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제법도 법으로서 강제를 그의 고유한 속성으로 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강제는 통일적인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국제법에서 강제는 매개국가에 의하여 실현된다. 경제의 실현방식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는 구별될 수 있으나 국제법에 강제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³¹⁾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이 ‘법은 정치실현의 무기’로 파악하고, ‘당정책 실현의 도구’로서 인식하며, 그 법의 강제는 국가권력기관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은 법이론적으로 국제법도 강제를 띤 법으로서 인정을 하고, 강제의 주체를 매개국가로 함으로써 국제법에서는 국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법을 인정하는 논리는 국제적인 교류와 접촉이 불가피한

28) 김영철, 자주시대의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 1984, 제 3호, p.47.

29) 김영철, 위의 논문, p.47

30) 정동윤,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세종문화사,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p.705.

31) 김영철, 위의 논문, p.53.

현대사회의 실정에 적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제법을 국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화 논리로서, 북한의 국제법에 관한 이러한 태도를 법학이론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토지법(학), 환경보호법(학) 등의 분야

(가) 토지법(학)

지주에 대한 투쟁의 산물인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의 성립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공동소유가 국가의 핵심문제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방후 북한토지법의 변천과정은 개인소유토지의 단계적 국유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4월 9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구현법 제 6조와는 달리 제 21조에서 모든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제 22조에서 협동단체도 토지, 부립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를 소유할 수 있으며,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 4월 29일 개정된 북한 토지법 제 11조에 의하면 협동적 소유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그런데 북한의 법학자 리필수는 “협동단체 소유토지는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전기간에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되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한 형태”³²⁾이라고 하고, 또한 그는 “협동적 토지소유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결코 이 소유가 국가적 소유의 토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32) 리 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토지법의 규제내용, 법학논집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47.

는다”³³⁾ 라고하여 협동적 토지와 국가적 소유의 토지를 공공연히 차별화하고 전국토를 국유화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결실로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 23조에서는 “국가 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 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라고 규정하여 협동단체의 소유도 결국은 국가의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헌법 규정의 토지에 관한 기초는 토지국유화로 인한 토 지이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근로의욕 상실을 염려한 심리적 현혹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학자 리 필수가 법학논문집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 회주의토지법의 역할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의 주인으로서 의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토지건설, 토지관리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탁월한 리론”³⁴⁾ 이라고 역설한 데에서 위의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토지법은 결국 토지혁명과 토지 국유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업적을 고착시키고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 근로의욕을 향상시켜서 토지 를 보호 관리하고 국토의 이용을 능률적으로 변혁시켜 나가기 위한 내 용들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토지법은 사회주의체제하의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제 문제를 하나의 법률체제로 구성하여 법전화

33) 리 필수, 위의 책, p.43.

34) 리 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토지법에 관한 이론, 법 학논문집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65.

한 것이다.

이러한 토지법은 김일성의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전문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국토개발과 토지보호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고 선언하여 북한의 토지법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토지정책의 실현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토지법 제1조에서는 토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제 2조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북한의 토지법에서도 토지의 완전한 국유화가 이루어져서 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제6조에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여 그 리용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이용의 과학화 내지는 공업화와 현대화를 위한 토지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북한주민을 유도하는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법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토지법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사회나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토지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인 토지관계 법학이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인 토지의 공동소유개념에 대한 변화나 변화이론은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나) 환경법(학)

북한은 또한 다른 서방의 제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1986년 4월 9일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찍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성문화하여

표명했다. 또한 1992년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 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도 몇몇 안되는 환경입헌국임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자연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김일성 주석명령 제1호에서는 나라의 자원을 이끼고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자원의 이용 관리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바다새 번식보호구 및 수산자원보호구 등을 설정함으로써 광범위한 환경보호정책을 실행하였다³⁵⁾. 또한 198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인민보건법 제 21조에서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는다. 공장, 기업소와 해당 기관들은 가로수와 녹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보호라는 용어와 공해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민보건법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은 북한주민들이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음으로서 질병을 예방하려는 의도였다³⁶⁾.

그리고 1986년 제정된 환경보호법 전문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환경보호의 근본목적과 입장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의 질병예방과 근로능력유지로 인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

35) 노동신문, 1976. 3. 6. 법규해설

36) 류구동, 예방의학적 방침은 우리당 보건정책의 기본, 근로자, 1985. 1, p.62.

설사업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는 서구 자유경쟁경제체제에서의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와는 그 형태나 양상이 다르고, 환경피해의 정도나 속도 역시 느리다고 볼 수있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경오염 정화시설이나 환경보호산업 등의 오염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어서 환경이 가시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북한의 환경보호 조항의 헌법에의 도입과 환경보호법의 제정 등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은 실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 7조는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부면에서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며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학무기 생산보유국임은 물론 이란·이라크등 세계의 여러나라에 화학무기와 화학무기 생산기술 수출국임은 국제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의한 핵사찰시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장을 하고, 대만으로부터 핵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장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지하에 매립하려는 움직임들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찍부터 환경보호법의 제정등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에서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보호에 관한 여러법률들을 살펴볼때, 북한의 환경법에서는 인위적 자연훼손과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고, 훼손되고 파괴된 자연환경을 회생시키려는 목적하에 전개되는 논리와 이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법은 하나의 대외 과시적인 형식적 조항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6) 경제법(학)분야

서구 민주주의국가의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私的自治나 계약자유의 원칙들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의 분쟁의 해소나, 원활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제법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서구 자유경쟁 경제체제에서와 같은 경제법이 발전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쟁 무역지대로 지정한 이후 대외개방 관련법규의 개정과 제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1995년 3월 현재에는 21개의 개방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관계 법령들은 북한의 법학자는 물론이고 정치인, 경제인 조차도 생소한 대외 무역관계나 합작에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강조와 혼합의 필연성 때문에, 경제관계 법령들이 제대로 정비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의 북한경제법분야에서 어떤 학문적인 업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III. 북한법(학)의 내용과 실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북한법의 내용은 질서유지와 정의를 실현하고·범죄를 방지하고·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서 독재자의 지위유지를 위한 통제와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일관되어 있다.

북한의 정연수³⁷⁾는 법은 ‘당정책 실현의 무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

37) 정 연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 재산보호관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

으며, 김 일성도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³⁸⁾라고 하였으며 김일성 역시 ‘법은 정치 실현의 무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북한 김영철의 “다 알고있는 바와 같이 법의 본질적 요소는 강제이다, 법은 그 위반에 대하여 강제를 가하는 기능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강제없는 법은 없다”³⁹⁾ 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북한에서는 법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60세 회갑 기념논문집의 머리말⁴⁰⁾에서와 같이 북한법을 마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 법에 기초를 두고, 이를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무용담등과 결부시켜 김일성이론 즉 김일성주의로 수정 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을 교묘히 구속시키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전분야가 ‘법은 당정책의 수단이며 국민은 이러한 법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김일성 사후 그의 세습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항일투쟁의 공적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여 김일성식의 통치방법이 아닌 독자적인 통치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조만간에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법체계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요구, 사회과학, 1983년 제1호, p. 60.

38) 김 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 할 데 대하여, p.11.

39) 김 영철, 자주시대의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리해, 1984년, 사회과학, 3호 p.3.

40)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주의 법에 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리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1, p.4.

IV. 결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후 소련군에 의해 점령 당한 구 동독의 경우도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법질서의 발전과정을 겪었다. 서독의 학자들은 1950년 이러한 동독의 국가적 특성을 “동독의 체계는 비민주적·테러국가로 특징 지워졌다”⁴¹⁾고 하였으며, 1964년 서독의 사회민주당(SPD)은 그의 보고서에서 “동독은 불법국가(Unrechtsstaat)”⁴²⁾로 규정한 이래 동독이 불법국가이었다는 학자들의 견해는 통일이 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10월 3일 이후 구동독은 서독헌법 제23조2문(Art. 23 S.2 GG)에 근거하여 ‘영입된(Beitritt)지역’으로 서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언되고⁴³⁾, 서독의 헌법이 통일된 독일전역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법분야에서도 역시 1990년 8월 30일체결된 통일조약에 의하여 영입된 지역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경과적인 서독법적용조치가 이루어져 구동독의 법과 법학의 무존재와 무가치성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법사상을 기초로 하고 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우리민족의 전통을 가미한 법이론을 전개하면서 공산당의 일당독제 체제의 존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김일성이 제창한 소위 “사회주의 주체사상 법이론”이 북한법학의 근본이념이며 기초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죽은 이후 “사회주의 주체사상 법이론”은 세습 독재자 김정일의 집권과 일인 독제를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 즉 “붉은깃발사상”을 김일성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법이론”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이론이라고 표면화하고 있으나, 아직 법학지나 해설서 등에

41) Kurt Thomas Schmitz,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Integration, 1978, p.84; Protokoll der SPD 1950, S.727.

42) Kurt Thomas Schmitz, 위의 책, p.170; SPD Protokoll 1964, p.15.

43) Christoph Degenhart, Staatsrecht I, 7.Aufl. 1991, Rn. 213e.

서 언급되는 단계에 와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북한법학의 기초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법이론”이며, 북한법은 이러한 북한법학이론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학을 형식적 의미에서는 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우리나라 전역에 통용되는 법과 법이론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통일독일의 선례와 같이 서구민주주의의 법을 가진 남한의 법을 적용하되,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수정한 경과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최대한 북한주민의 권익보호와 남북주민들간의 불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